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 만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350

2022. 11. 25. 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11. 2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황보연 경제정책실장)

1. 제안이유

가. 핀테크·블록체인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분야별· 창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

- 나.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·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적 지식, 기업지원 사업의 수행 경험, 기업·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.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'적정' 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 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3년 3월~2024년 12월(1년 10개월)

다. 소요예산 : 778백만원(2023년 예산안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ㅇ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입주기업 관리, 시설운영
 - 입주기업 모집·선정 및 관리, 시설전반 운영 및 안전관리
- ㅇ 초기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지원
 - 회계·경영·법무·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·멘토링 진행
- o 마케팅·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국내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 지원,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
 - 투자사,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
- ㅇ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기술전문가 매칭 상담, 기술사업화 지원

- 블록체인 분야 재직자, 예비창업자, 학생 등 대상 블록체인 전문 교육
- 정부·민간 등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·안내 및 사업참여 지원
- ㅇ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 성과관리
 - 입주기업 매출, 투자유치, 고용창출 등 주요성과 분석
 - 시설 및 지원사업 만족도, 이용현황 등 운영성과 관리
- 바. 시설위치 :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·11층(2개층, 2,014㎡)
- 사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0 민간위탁 추진 근거
 - 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17조 및 제18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
 - ㅇ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, 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
 -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-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22.10.6)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

- 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 - 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- 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인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의안은 핀테크・블록체인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・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의 신규 위탁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□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나.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조성 현황

-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(이하 "제2핀테크랩")은 아시아 금융중심
 도시 도약을 목적으로 핀테크・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초기 스타
 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관 예정임.
 -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, 라운지, 교육장 및 회의실, 유관 기관·VC²⁾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파트너존 등으로 구성됨.

¹⁾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<u>민간위탁을 하고자</u>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²⁾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형태로 투자하는 전문적인 금융 기관이나 자본을 말함.

- 현재 입주기업 모집 중에 있으며 12월 개관 후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예정임.

<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사업개요 >



∘시설명: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

∘위 치 :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·11층

∘규 모: 2,014㎡(2개층, 8층 1,007㎡/

11층 1,007㎡)

·주요사업: 핀테크·블록체인 초기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, 초기 스타트업 경영안정화, 투자유치·마케팅지원,

블록체인 특화 지원 사업 등

∘공간구성: 입주기업공간 25, 파트너존 5,

회의실15, 멤버십존 16석 등

- 제2핀테크랩은 여의도에 위치한 '서울핀테크랩'에 이어 AI·빅데 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조성됨.
 - 핀테크랩 시설은 지원대상과 기능을 분담해 운영할 예정으로 제2 핀테크랩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, 수익화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, 서울핀테크랩은 7년 이내 유망 핀테크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.

〈 서울핀테크랩과 제2핀테크(블록체인)랩 비교표 〉

구 분	서울핀테크랩 - 여의도	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- 마포	
운영방식	민간위탁(그라운드업벤처스 주식회사)	용역계약으로 시범운영(2022.10~ 2023. 2) 후 민간위탁사업 전환(2023. 3~)	
2022년	7,640백만원	637백만원	
예산	(민간위탁 1,640, 임대료 등 6,000)	(공사 227 운영 390 임대료 20)	
지원대상	유망 핀테크 창업기업(창업 7년이내)	핀테크: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	
입주기업 선발기준	① 창업 7년이내 ② 1억원 이상 투자유치 ③ 매출 1억원 이상(최근 3년간 누적) ④ 직원 5인 이상 (①필수 + ②~④ 중 2개 이상 충족)	핀테크·블록체인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	
입주현황	82개사(국내 73개사, 해외 9개사)	25개사 내외(예정)	
주요사업	-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평가	- 입주기업 모집 및 공간제공 -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	
	- 법률·규제·인사 등 멘토링 및 실무교육		
	- 데모데이, 마케팅 진단 등 투자유치 지원	- 비즈니스모델 개발, 투자유치,	
	- 피노베이션 챌린지 등 금융·타분야	기술발 및 사업화,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, 마케팅 -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	
	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		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서울시는 제2핀테크랩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해당
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.
- 메타버스³), NFT⁴), 가상화폐 등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핀 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은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분야로

³⁾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,경제,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, 아바 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.

⁴⁾ 대체 불가능 토큰(Non-fungible token, NFT)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(token)이다. 그림·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서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. 즉,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.

초기 공공영역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함.

- 또한,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초창기 창업지원(제2 핀테크랩)과 성장단계 기업(서울핀테크랩)의 글로벌 투자유치, 해외 시장 비즈니스 진입 등 연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핀테크랩 운영사무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,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인・단체 등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,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, 제2핀테크랩 조성 공간은 올해 6월말까지 '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'(2020년 개관)가 운영되던 곳으로 기존 입주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관 결정과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존 창업기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.
 -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2021년도 6월까지도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, 같은 해 11월 제2핀테크랩 조성이 계획되면서 폐관이 결정됨.
 - 2021년 말까지 입주 중이던 32개사 중 28개사의 입주기간을 폐관일 (2022.6.)까지 연장했으나, 센터 폐관 이후 모두 퇴거 조치됨.

<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 현황 >

구분	기업수	당초 입주기간	연장 입주기간	총입주기간
1기	12개사	'20.1.1.~'21.12.31	'20.1.1.~'22.6.30	2년6개월
271	7개사	'20.5.1.~'22.4.30	'20.5.1.~'22.6.30	2년2개월
	1개사	'20.5.1.~'22.5.30	'20.5.1.~'22.6.30	2년2개월
371	2개사	'21.1.1.~'21.12.31	'21.1.1~'22.6.30	1년6개월
파트너사	1개사	'21.1.1.~'21.12.31	'21.1.1~'22.6.30	1년6개월
471	4개사	'21.5.1.~'22.4.30	'20.5.1.~'22.6.30	1년2개월
	1개사	'21.6.1.~'22.5.30	'21.6.1~'22.6.30	1년1개월

 서울시 핵심사업의 급격한 존폐결정은 매몰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, 공신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양 되어야 할 것임.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Ⅲ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350

제출년월일: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핀테크·블록체인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분야별· 창업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
- 나.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·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적 지식, 기업지원 사업의 수행경험. 기업·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'적정' 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3.3월~2024.12월(1년 10개월)

다. 소요예산 : 778백만원('23년 예산안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○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입주기업 관리, 시설운영

- 입주기업 모집·선정 및 관리, 시설전반 운영 및 안전관리

- 초기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지원
 - 회계·경영·법무·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·멘토링 진행
- 마케팅·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국내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 지원,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
 - 투자사,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
-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기술전문가 매칭 상담. 기술사업화 지원
 - 블록체인 분야 재직자, 예비창업자, 학생 등 대상 블록체인 전문교육
 - 정부·민간 등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·안내 및 사업참여 지원
-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 성과관리
 - 입주기업 매출, 투자유치, 고용창출 등 주요성과 분석
 - 시설 및 지원사업 만족도. 이용현황 등 운영성과 관리
- 바. 시설위치 :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 11층(2개층, 2,014㎡)
- 사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- 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17조 및 제18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제2서울핀테크(블록체인)랩 운영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, 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
 -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-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'22.10.6)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]

- 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 - 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- 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금융투자과 디지털금융팀 오혁준 (☎ 2133-5240)

최나현 (☎ 2133-5241)